

-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
- ⑤ ‘수급자’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-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
- ⑦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‘수급자’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
제 23 조(계약의 해제 시 쌍방의 의무)

- 1) 수급자는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의사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2) 기관은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제 24 조(재계약)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

- 1)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2)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혹은 등급인정유효기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
- 3) 기타 수급자와 기관에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(갱신시 등)

제 25 조(기록 및 공개)

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요구 할 경우에는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 26 조(이용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및 사고)

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

- 1) 먼저 기관으로 긴급 연락한다
- 2) 이용자의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. 다만,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
- 3) 인근 병원이나 법적대리인 및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과 연결한다.
- 4)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.
- 5)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..
- 6) 이용자에게 치료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하며,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..
- 7) 이용자 및 보호자는 시설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.